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09호

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제5항 및 제88조 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106	10	국지 도로	1,707	달천동 892-23	246호 주차장	일반 도로	58호 자연 취락 지구	'14.8.7 울(북)고 126호	
변경	소로	1	106	10	국지 도로	1,709	달천동 892-23	246호 주차장	일반 도로	58호 자연 취락 지구	'14.8.7 울(북)고 126호	

나.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 경 전 도 로 명	변 경 후 도 로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 1-106호선	소로 1-106호선	▪ 노선변경 (L=1,707m→1,709m)	▪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에 의해 일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(변경)을 하고자 함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임

2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)